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2015. 11

(주)삼진씨앤씨



목차

제1장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 |
|---------------------|---|
| 1.1 주민 등 의견수렴 | 1 |
| 1.2 주민설명회 | 5 |

제2장 의견수렴결과

| | |
|------------------------|----|
| 2.1 주민 의견수렴 결과 | 13 |
| 2.2 관련기관 의견수렴 결과 | 13 |

제1장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1.1 주민 등 의견수렴

-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1.1.1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 승인기관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 주민의견 수렴기관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및 포항시

| | |
|---|---|
| <p>대구일보 idaegu.com</p> <p>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5-25호</p> <h3>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h3> <p>『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28조 규정에 따라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 등 의견수렴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p> <p>2015년 9월 4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p> <p>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 조성사업 나. 위치 :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평리, 이천리 일대 다. 사업기간 : 2008 ~ 2020년 라. 사업면적 : 1,459,180㎡ 마. 사업시행자 : ㈜삼진퍼블릭</p> <p>2.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15년 9월 4일 ~ 2015년 11월 17일 나. 공람장소 : 경상북도 투자유치사업(069-660-3593)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개발2부(063-660-1853) 포항시 투자유치사업(054-270-3883) 흥해읍사무소(054-240-7274) 다. 공람내용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p> <p>3. 주민설명회 개최 가. 일 시 : 2015년 11월 5일 (목요일) 오후 2시 나. 장 소 : 포항시 흥해읍사무소(2층 회의실)</p> <p>4. 주민의견 제출방법 및 기간 가. 제출기간 및 장소 : 2015년 11월 20일까지 공람장소에 제출 나.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제출서 양식에 따라 서면제출 다. 의견내용 : 환경영향, 환경보전방안, 권역회 개최요구 등에 관한사항 ※ 환경영향평가(초안) 의견 및 의견보충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포항시 흥해읍(지하)에 기재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개발2부(063-660-18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 <p>2015년 9월 4일 금요일 WWW.HANGKOOKILBO.COM 한국일보</p> <p>☎ 코스피 1,915.53(+0.35) ☎ 코스닥 678.25(+0.23) ☎ 원/달러 환율 1,190.30 (+0.60)</p> <p>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5-25호</p> <h3>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h3> <p>『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28조 규정에 따라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 등 의견수렴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p> <p>2015년 9월 4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p> <p>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 조성사업 나. 위치 :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평리, 이천리 일대 다. 사업기간 : 2008 ~ 2020년 라. 사업면적 : 1,459,180㎡ 마. 사업시행자 : ㈜삼진퍼블릭</p> <p>2.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15년 9월 4일 ~ 2015년 11월 17일 나. 공람장소 : 경상북도 투자유치사업(069-660-3593)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개발2부(063-660-1853) 포항시 투자유치사업(054-270-3883) 흥해읍사무소(054-240-7274) 다. 공람내용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p> <p>3. 주민설명회 개최 가. 일 시 : 2015년 11월 5일(목요일) 14:00 나. 장 소 : 포항시 흥해읍사무소(2층 회의실)</p> <p>4. 주민의견 제출방법 및 기간 가. 제출기간 및 장소 : 2015년 11월 20일까지 공람장소에 제출 나.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제출서 양식에 따라 서면제출 다. 의견내용 : 환경영향, 환경보전방안, 권역회 개최요구 등에 관한사항 ※ 환경영향평가(초안) 의견 및 의견보충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포항시 흥해읍(지하)에 기재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개발2부(063-660-18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
| <p>대구일보(2015년 9월 4일(금))</p> | <p>한국일보(2015년 9월 4일(금))</p>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공고]

HOME SITEMAP ENGLISH JAPANESE CHINESE SEARCH



투자자이드 **투자지구소개** **상담/민원** **DGFEZ소식** **DGFEZ소개**

공지사항 보도자료 **고시/공고** 입찰/수익 포토갤러리 홍보동영상 홍보자료 DGFEZ Magazine

저식량조형 비즈니스 허브
DGFEZ!

DGFEZ소식

- 공지사항 <
- 보도자료 <
- 고시/공고 >**
- 입찰/수익 <
- 포토갤러리 <
- 홍보동영상 <
- 홍보자료 <
- DGFEZ Magazine <

고시/공고

Home > DGFEZ 소식 > 고시/공고

| | | |
|---|--|---------------------|
| 주한용합기술산업지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 | 2015.09.03 11:18:00 |
| 작성자 | 김영우 | 조회 30 |
| 파일 | <input type="checkbox"/>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 공고문.hwp <input type="checkbox"/> [요약문] 포함 용합기술산업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초안).pdf | 분류 |
| <p>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5-26호</p> <p style="text-align: center;">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p> <p>『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및 제30조 규정에 따라 “포항 용합기술산업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 등의 견수렴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5년 9월 4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p> <p>1. 사업개요 가. 사업명: 포항 용합기술산업지구 조성사업 나. 위치: 포항시 북구 동해읍 괴전리, 이인리 일원 다. 사업기간: 2008~2030년 라. 사업면적: 1,453,190㎡ 마. 사업시행자: (주)삼진씨엔씨</p> <p>2.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2015년 9월 4일 ~ 2015년 11월 17일 나. 공람장소: 경상북도 투자유치실(353-950-3536)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개발2부(353-450-1853) 포항시 투자유치담당관(054-270-3363) / 흥해읍사무소(054-240-7574) 나. 공람내용: 환경영향평가서 초안</p> <p>3. 주민연락처 가. 알 시: 2015년 11월 5일(목요일) 14:00 나. 장 소: 포항시 흥해읍사무소(2층 회의실)</p> <p>4. 주민의견 제출방법 및 기간 가. 제출시기 및 장소: 2015년 11월 26일까지 공람장소에 제출 나. 제출방법: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술서 양식에 따라 서면제출 다. 의견내용: 환경영향, 환경보건반영, 공청회 개최요구 등이 관한사항 ※ 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문 및 공고문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포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개발2부(053-550-18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 | |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인터넷공고(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포항시청 | 사이비교육 문제반대 | 검색 | 청주도시포항 | 369일, 24시간 언제나 물어보세요. | 별리콜 270-8282

시민참여 | 전자민원청구 | 시정소식 | 포함 3.0 행정정보 | 도약하는포항 | 분야별정보 | 바로가기

시정소식

자연과 함께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공지사항

이전자료보기

※ 공지사항 이 게시물을 보시려면 이전자료보기 버튼을 눌러 주시오.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문 게시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문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기간내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5-25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3조 규정에 따라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 등 의견수렴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4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인터넷공고(포항시청)]

EIASS | 사업조치 및 정보입력 | 협의통계 | 평가작성도움미 | 국민참여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사업조치 및 정보입력
Business information mode

평가정보입력

평가번호: 092015M002

사업종류명: 공 사업

사업명(평가시행):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 조성사업

사업구분: 환경영향의 개안

입회기관: 대구지방환경청

초안접수일: 2015.08.04

사업유형: 민원사업

사업자주요: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미륵리 이진리 1111

평가내 공개물의 여부: 동의

입부담당자 정보

| | | | |
|------|--------------|--------|--------------------|
| 필리이관 | 대구지방환경청 | 담당자 | 인실터 |
| 담당부서 | | E-Mail | gimster75@korea.kr |
| 연락처 | 152-980-8988 | 팩스번호 | 152-980-1195 |

환경영향평가서제출 상세정보

| | | | | | | | | | |
|------------|---|--------|------------------|------|--------------|-----|--------------|--------|------------------|
| 사업자명 | (주)삼진지앤씨 | | | | | | | | |
| 승인기관명 | 대구광역시환경자유구역청 | | | | | | | | |
| 사업규모 | * 145200 m ² | | | | | | | | |
| 평가대상지 | 주식회사 부설기술단지 | | | | | | | | |
| 평가시 작성자/일부 | <table border="1"> <tr> <td>입회명</td> <td>(주)웅신기술당</td> <td>팩스번호</td> <td>152-980-1119</td> </tr> <tr> <td>연락처</td> <td>152-980-1119</td> <td>E-Mail</td> <td>w606@woodwin.org</td> </tr> </table> | 입회명 | (주)웅신기술당 | 팩스번호 | 152-980-1119 | 연락처 | 152-980-1119 | E-Mail | w606@woodwin.org |
| 입회명 | (주)웅신기술당 | 팩스번호 | 152-980-1119 | | | | | | |
| 연락처 | 152-980-1119 | E-Mail | w606@woodwin.org | | | | | | |

초안공람

| | |
|--------|--|
| 공람공고일 | 2015.08.04 |
| 초안공람기간 | 2015.08.04 ~ 2015.11.17 |
| 반론상수 | 경상북도 무주읍제1동, 대구광역시자유구역청 제1동, 주남시 무주읍제1동, 물레물리사무소 |
| 신청취급소 | 포항시 흥해읍사무소(신청 접수소) |
| 신청접수시간 | 제1동: 11월 12일(목요일) 14:00 |
| 의견제출기간 | 2015.11.18 ~ 2015.11.28 |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인터넷공고(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5 - 26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9조 규정에 따라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 등 의견수렴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4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업개요

- 가. 사업명 :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 조성사업
- 나. 위치 :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이인리 일원
- 다. 사업기간 : 2008~2020년
- 라. 사업면적 : 1,459,190㎡
- 마. 사업시행자 : (주)삼진씨앤씨

2. 공람기간 및 장소

- 가. 공람기간 : 2015년 9월 4일 ~ 2015년 11월 17일
- 나. 공람장소 : 경상북도 투자유치실(053-950-3536)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개발2부(053-550-1853)
포항시 투자유치담당관(054-270-3863) · 흥해읍사무소(054-240-7574)
- 다. 공람내용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3. 주민설명회 개최

- 가. 일시 : 2015년 11월 5일(목요일) 14:00
- 나. 장소 : 포항시 흥해읍사무소(2층 회의실)

4. 주민의견 제출방법 및 기간

- 가. 제출기간 및 장소 : 2015년 11월 26일까지 공람장소에 제출
- 나.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제출서 양식에 따라 서면제출
- 다. 의견내용 : 환경영향, 환경보전방안, 공청회 개최요구 등에 관한사항
※ 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문 및 공고문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포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개발2부(053-550-18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1.2 주민설명회

-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내지 제39조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공고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음

□ 주민설명회 개요

- 일 시 : 2015. 11. 05.(목) 오후 02:00
- 장 소 : 포항시 흥해읍사무소(2층 회의실)
- 주 관 : 포항시
- 참 석 자 : 약 100명(포항시청, 마을이장, 주민 등)
- 설 명 자 : ㈜우성기술단 대표이사 심인수
- 홍보사항 : 현수막설치(흥해읍사무소 외 3개소)
포항시 홈페이지 및 신문공고(한국일보, 대구신문)

○ 주요내용

-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설명
- 지역환경영향 설명

○ 보고회 진행 계획

- 기본계획 구상 설명 : 30분
- 의견수렴 및 토의 : 30분

□ 주요질의 및 답변내용

| 질의자 | 주민질의내용 | 답 변 |
|------|---|--|
| 주민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인2리 저수지 바로 밑 제설이 포함되는 것인지 확인 바람. • 토지거래허가지로 묶어 놓아 10년 가까이 팔지를 못해 불이익을 받았고 감정가가 엄청 나빠지게 되었음. 그러므로 토지거래허가지를 해제하고 소유주들한테 주위 땅과 가격을 비슷하게 하여 주민들이 피해를 덜 받게 해주기를 바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함되었음. • 현재 사업진행 여건상, 토지감정을 끝난 후에 주민들에게 통보 후 토지거래허가지를 해제토록 하겠음. |
| 주민 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련3리는 이인리과 대련리 경계선에 있는데, 대련3리의 상류지역에 큰 개발사업이 시행되다보니 모든 환경적 조건이 나빠질 것으로 보여 환경오염이나, 도로에 대한 계획을 확실히 잡아주기를 바람. • 새로운 도로가 생기면 기존에 있던 농로가 끊길 수 있어 이 부분을 조심하고 농로를 최대한 살려주기를 바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변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겠음. • 기존에 있던 농로는 최대한 유지토록 계획함. |

| 질의자 | 주민질의내용 | 답변 |
|------|---|---|
| 주민 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질에 나타나는 피해를 완벽하게 막을 수 없을 것 같아 보 이므로, 주민들을 위한 저감방안을 확실하게 제시하길 바라 며, 이인3지구까지 도로를 넓히고 연계할 수 있는지 궁금 함. 또한 경제특구지역이 들어오면 약취나 도로 등 여러 가지 피해가 없는지 알고 싶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산업지구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공사운영시 오 폐수가 생성되는 경우 관을 이용하여 홍해상수원 처리장으로 보내도록 함. 추후 포함시 예산 확보시 이인3지구와 본 산업지구의 연결도로 조성을 가능 토록 검토하겠음. 빗물에 의해 하류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들은 하 단부분에 저류지(영구저류지)를 설치하여 자연정화 를 시키고 배출 함. |
| 주민 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인3지구는 포함시에서 75만 인구를 지정 하였지만, 현재 사업시행 여부를 모르는 불투명한 상황이므로 확실하게 계 획을 잡아주길 바람. 공사시작을 하면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먼지 등에 의 해 이인2리 자연식생군락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므로 적극적인 조치를 바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후에 공사시 차량이동용 진입도가 별도로 만들 어 마을에 직접적으로 피해가 없도록 하며, 추가적 인 저감방안을 검토하겠음. |
| 주민 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가 진행되면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한 보상이 확실히 되어야 하며, 이인2지구와 3지구가 경제특구지역이 라고 험하게 다루지 말아주기를 바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상은 2016년도 중반기쯤에 될 것같으며, 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등록 및취득 법률에 의해 평가되어 보상에 대한 가격이 정해지며, 그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됨. |
| 주민 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지구 부근 저류지의 교량바닥과 초곡천 교량바닥의 높 이차가 별로 없어, 다른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에 애로상황 이 생기게 되므로 두 교량바닥의 높이차가 있도록 협조를 부탁 바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류지 같은 경우에는 포함시와 협의를 해서 정하 겠음. |
| 주민 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8년도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고나서 공시지가가 올라간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예전의 공시지가로 보상을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공시지가가 오른 것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인지 궁금함. 오폐수 관로는 이인2리를 통과하게 되는데, 단독관로를 사 용할 것인지 등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기를 바라며, 토사를 포함한 빗물이 유입될 경우 침전조 같은 대책이 있는지 궁 금함. 오폐수 관로 설치 전 이인2리 마을에 피해가 없도록 관리 잘 해주기 바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시지가는 매년 산정하기 때문에, 나중에 협의를 통해 정할 것임. 산업지구 내 지정된 관로가 있어 발생하는 오폐수 는 포함시 계획에 따라 홍해상수원처리장으로 보 낼 것이며, 산업지구 내에 침전지를 설치하여 토사 유출을 방지하겠음. 이인2리 오폐수 관로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진 행할 계획이며, 향후 마을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 음. |
| 주민 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체인지 부분의 28번 국도에서 진입로가 땅에 별도로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옛날에 있던 도로가 사라지면서 생 기게 되는지가 궁금하며 다른 불이익이 없는지가 궁금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도로는 입체교차로 및 부체도로로 계획하여 기존 도로를 사용가능토록 계획을 수립하였음. |

□ 주민설명회 및 현수막 게재 사진



□ 주민설명회 현수막 게재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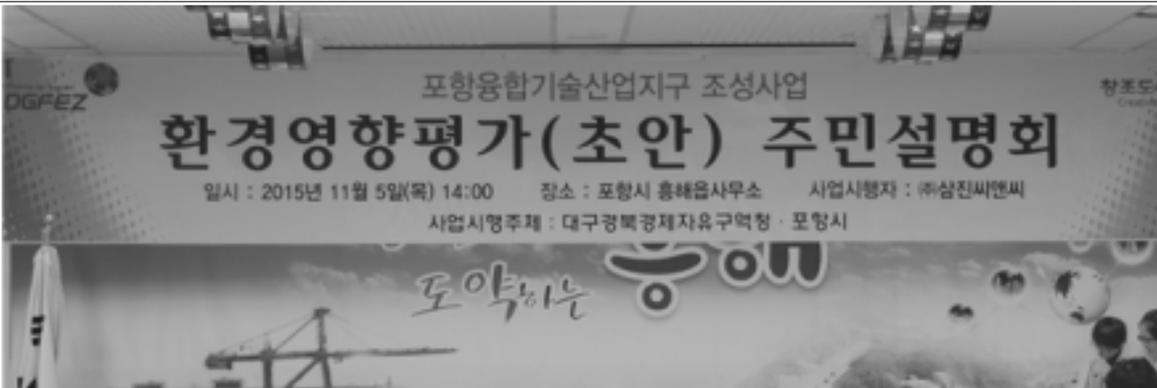
① 흥해읍사무소 거치대



②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 산 135일원



③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산 52-1 일원



④ 흥해읍사무소 실내

□ 참석자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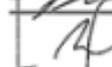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단

- 사업명 :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 장 소 : 포항시 흥해읍사무소(2층 회의실)
- 일 시 : 2015년 11월 05일(목요일) 14:00

| 연번 | 성명 | 주소 | 서명날인 | 비고 |
|----|-----|----|------|----|
| 1 | 김영재 | | | |
| 2 | 최달래 | | | |
| 3 | 정병강 | | | |
| 4 | 이복삼 | | | |
| 5 | 최가라 | | | |
| 6 | 배차원 | | | |
| 7 | 이태일 | | | |
| 8 | 박진규 | | | |
| 9 | 이재영 | | | |
| 10 | 김재근 | | | |
| 11 | 김재원 | | | |
| 12 | 한재영 | | | |
| 13 | 김홍진 | | | |
| 14 | 박영철 | | | |
| 15 | | | | |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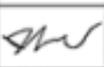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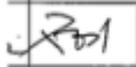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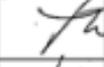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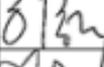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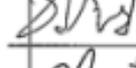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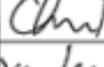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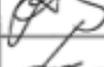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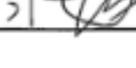
- 사업명 :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 장 소 : 포항시 흥해읍사무소(2층 회의실)
- 일 시 : 2015년 11월 05일(목요일) 14:00

| 연번 | 성명 | 주소 | 서명날인 | 비고 |
|----|-----|----|---|----|
| 1 | 이종훈 | |  | |
| 2 | 김병용 | |  | |
| 3 | 서현주 | |  | |
| 4 | 이상득 | |  | |
| 5 | 권광수 | |  | |
| 6 | 신영숙 | |  | |
| 7 | 김영민 | |  | |
| 8 | 김영민 | |  | |
| 9 | 최주환 | |  | |
| 10 | | | | |
| 11 | | | | |
| 12 | | | | |
| 13 | | | | |
| 14 | | | | |
| 15 | | | | |

2)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단

- 사업명 :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 장 소 : 포항시 흥해읍사무소(2층 회의실)
- 일 시 : 2015년 11월 05일(목요일) 14:00

| 연번 | 성명 | 주소 | 서명날인 | 비고 |
|----|-----|----|---|----|
| 1 | 도국영 | : |  | |
| 2 | 이우조 | |  | |
| 3 | 김팔숙 | |  | |
| 4 | 박자미 | : |  | |
| 5 | 장희만 | : |  | |
| 6 | 이정희 | |  | |
| 7 | 김민희 | |  | |
| 8 | 백상원 | : |  | |
| 9 | 이종범 | |  | |
| 10 | 김서희 | : |  | |
| 11 | 최은영 | |  | |
| 12 | 김광영 | : |  | |
| 13 | 오재욱 | : |  | |
| 14 | 김기 | |  | |
| 15 | 김동성 | : |  | |

(3)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단

- 사업명 :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 장 소 : 포항시 흥해읍사무소(2층 회의실)
- 일 시 : 2015년 11월 05일(목요일) 14:00

| 연번 | 성명 | 주소 | 서명날인 | 비고 |
|----|-----|----|------|----|
| 1 | 문애진 | | | |
| 2 | 이리형 | | | |
| 3 | 박태영 | | | |
| 4 | 김익하 | | | |
| 5 | 이태원 | | | |
| 6 | 김보영 | | | |
| 7 | 최영호 | | | |
| 8 | 정승환 | | | |
| 9 | 박도영 | | | |
| 10 | 신준하 | | | |
| 11 | 김순자 | | | |
| 12 | 김영진 | | | |
| 13 | 이영진 | | | |
| 14 | 유정하 | | | |
| 15 | 김민준 | | | |

(4)

제2장 의견 수렴결과

2.1 주민의견수렴 결과

| 구분 | 의견 | 반영여부 |
|------|---|---|
| 정병창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랜기간 개발도 많고 토지거래도 하기 어렵게 묶어서 토지소유자 손해가 아주 크므로 감정보상시 도로 반대측과 비슷하게 보상할 것 ○ 개발지역 이외는 토지매매가 활발하게 즉시 토지거래 허가를 풀 것 ○ 저수지 밑에 있는 영일정씨 제실을 포함하여 보상해 줄것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록 및 취득 법률에 의해 평가되어 보상에 대한 가격이 정해지며, 그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할 계획임 ○ 현재 사업진행 여건상, 토지감정을 끝난 후에 주민들에게 통보 후 토지거래허가지를 해제토록 하겠음. ○ 본 계획에 포함되었음 |
| 이국창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산282번지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 완료 후 지적도상에 있는 기존 도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도로는 입체교차로 및 부체도로로 계획하여 기존 도로를 사용가능토록 계획을 수립 |

2.2 관련기관 의견수렴 결과

[대구지방환경청]

| 구 분 | 협 의 의 건 | 반 영 계 획 |
|----------------------|---|--|
| 1. 총 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 관련으로 우리청 등과 협의한 사항을 반드시 "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포함하여 작성협의하여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평가(본안) 작성시 협의기관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음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회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의견수렴 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내용을 비교·검토할 수 있도록 작성(도면, 표 등)하여 제시하여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평가(초안) 토지이용계획 변경시 비교·검토할 수 있도록 비교 제시토록 하겠음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시행으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및 시설 등에 대해서는 관계행정기관 등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작성·협의하여야 함 - 관계행정기관에서 제시한 의견 등을 수렴·검토하고, 각 항목별 예측결과에 따른 저감방안 및 반영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변에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작성토록 하겠음 - 좌변에 제시된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음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법 및 다른 부처소관 법령, 정책 등과 관련한 사항은 본 협의와 별도로 검토·반영하여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변에 제시된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음 |
| 2. 세부 협의의견 가. 대기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시설 용지에 대한 유치업종 배치계획을 명시하되, 주거시설과 교육시설과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히 계획 지구 서측 교육시설의 경우 산업시설 용지와 완충녹지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배치하고 있어 운영 시 대기질 및 악취 영향이 클 수 있으므로 유치업종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이용계획상 주거시설, 교육시설과 인접한 산업시설용지는 복합용지로서 산업, 연구(R&D), 벤처, 상업, 업무시설 등을 배치토록 할 계획이며, 산업용지 구역과 그 외 지역 사이에 완충녹지를 배치토록 하여 향후 산업시설 운영시 영향을 최소화토록 계획을 수립하였음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서(초안)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1회, 금번 1회 추가 측정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나 시기적으로 충분한 현황을 파악하기 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작성시 추가 측정을 실시하여 현황 자료로 활용토록 하며, 그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시 활용토록 하겠음 |

| 구 분 | 협 의 의 건 | 반 영 계 획 |
|----------------------|--|---|
| | <p>렵다고 판단되므로 최소 2회 이상의 추가 측정을 실시하여 계절별 특성이 고려될 수 있는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영향예측 시 활용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M-2.5 측정 추가하고, PM2.5 농도를 PM-10 농도의 20%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보수적인 적용(최소 60% 이상 적용) ○ 공사에 따른 배출량 산정 시 NOx에서 NO₂ 전환율을 명시하여야 하며, 운영 시 배출량 산정의 경우 40%를 적용하였으나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보수적인 적용 또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여 100% 전환율을 적용하여야 함 ○ 산업시설 운영 시 연료 사용 외 시설별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을 산정하여 영향예측을 실시하여야 함 - 업종별로 공정상 발생 가능한 대기유해물질(특정대기, 악취물질 포함) 발생량을 산정하고 구체적인 저감대책을 수립(TRI 자료 등을 활용) - 대기(악취) 저감시설 설치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가능한 한 최고의 저감효율을 발휘할 수 있는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 물류 운송차량 교통량, 이동경로를 확인하고 이동 도로변 주거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 PM-2.5 영향예측 추가 ○ 주거지역내 미세먼지, 소음진동, 발암성 물질의 유입을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주민들과의 의사소통 계획도 수립 - 인근 주민들의 눈, 피부, 호흡기계 증상과 폐기능 검사 청력 검사 등 건강검진을 사전에 실시할 경우 향후 건강장애 유무 판단에 근거로 사용 가능하므로 실시여부를 검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질 영향예측시 PM2.5의 농도는 PM-10 농도의 60%이상을 적용토록 하겠음 ○ 공사시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시 NOx에서 NO₂ 전환율을 명시토록하며, 운영 시 배출량 산정의 경우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여 100% 전환율을 적용토록 하겠음 ○ 좌변에 제시된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음 - 입주 업종별 공정상 발생 가능한 대기유해물질(특정대기, 악취물질 포함) 발생량을 산정하여 그에 따른 저감방안을 수립토록 하겠음(TRI 자료 등을 활용) - 입주 업종에 따른 저감시설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최고의 저감효율을 발휘할수 있는 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음 - 운영시 물류 운송차량 등에 따른 교통량을 고려하여 이동 경로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저감방안을 수립토록 하겠음 - 운영시 물류 운송차량에 따른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PM-2.5)을 예측하여 제시토록 하겠음 ○ 향후 사후환경영향조사시 주거지역 내 미세먼지, 소음진동, 발암성 물질 유입 확인을 위해 사후측정지점으로 선정하여 모니터링 할수 있도록 하겠음 - 좌변에 제시된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음 |
| <p>나. 수질 (지표-지하)</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평가서에 제시된 수질 현황 조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때 해당 지역의 수질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수질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사업지역 인근의 수계 현황을 자세히 조사하고, 유로 특성, 유량, 물흐름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수질측정지점 위치도 작성 - 사업시행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계를 추가로 파악하고 이를 대상으로 수질 측정 지점을 추가 선정 - 유황별(또는 계절별) 수질, 유황 변화를 파악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변에 제시된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음 - 사업지역 인근의 수계 현황을 자세히 조사하고, 유로 특성, 유량, 물흐름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수질측정지점 위치도를 작성하여 제시토록 하겠음 - 사업시행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계에 대한 검토 후 향후 사후환경영향조사시 측정지점을 추가토록 하겠음 -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제시된 지점에 대하여 추가로 하 |

| 구 분 | 협 의 의 건 | 반 영 계 획 |
|-----|---|--|
| | 수 있도록 추가 조사 실시 | 천의 수질현황 및 유황 현황을 제시토록 하겠음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질조사 항목에 COD(TOC) 추가 선정 - 해당 측정지점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사후환경영향조사시 지점별 측정항목에 COD(TOC)를 추가하여 측정토록 하겠음 - 좌변에 제시된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음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시 오수 발생량(11.3m³/일)에 대한 처리 계획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하수처리장 연계 또는 자체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할 경우 오수 처리수의 방류수 수질기준 등 구체적인 처리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에 발생하는 오수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토록 하겠음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사 유출을 저감하기 위해 침사지를 설치할 계획이나 사업지구 내 토양의 입도분석과 침사지의 저감효율이 누락되어 침사지 설치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사업지구 내 토양에 대한 입도분석과 부유물질 농도 예측을 통해 수용 하천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포착 대상 입경을 선정하여 침사지 규모를 결정하고 수용 하천의 부유물질농도(25mg/L이하)를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 부유물질 가중 농도 산정시 단위 환산 과정에서 오류로 인해 과소 예측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지는 개발사업에 따라 개발전 삼림과 농경지에서 개발중 나대지로 변경됨에 따라 홍수 및 토사유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홍수 및 토사유출량을 저감할 수 있는 임시저감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임시저감시설은 홍수 및 토사유출량을 동시에 저감할 수 있는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 4개소를 계획하였다. 토사조절부 용량결정시 최적대상 토사량은 유사포착율을 100%로 간주하여 RUSLE로 산정된 퇴적토사량 전량을 적용하였음. ※ 부유물질 가중 농도 산정시 단위 환산 과정에서 오류가 아닌 목록의 표기오타로 재검토시 산정에 과소 예측된 것이 아닌 것으로 검토되었음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사업지구 내 소하천의 수로화 및 유역의 상당 면적이 불투수면으로 전환됨에 따라 평상시 초곡천 등 하류 소하천의 유량 감소에 따른 용수공급의 영향과 수질에 악영향이 예상되므로 불투수면 증가에 따른 유황 변화와 이에 따른 용수공급 및 수질 영향을 예측하고 영향 정도에 따른 저감대책의 수립하여야 함 - 수질현황 조사 시 하천 유황 조사·분석 실시 - 하천 하류의 용수이용 현황 파악 - 강우-유출모델링(갈수기, 저수기, 평수기 등)을 통한 하류하천의 유황변화 예측 - 유량 변화에 따른 농업용수 공급방안에 대하여 하류 주민들과 사전 협의를 통해 주민들이 공감하는 대책을 수립·제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지 하류 소하천의 유황 변화와 이에 따른 용수공급 및 수질 영향을 예측하고 영향 정도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하겠음 - 하천유황 조사·분석하겠음 - 하천 하류의 용수이용 현황을 파악하여 제시토록 하겠음 - 강우-유출모델링으로 하류하천의 유황변화를 예측하겠음 - 농업용수에 대한 물리민과의 협의하여 대책을 수립하겠음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 시 생활용수는 양덕정수장에서 송수관로 및 가압장을 신설하여 공급할 계획이며, 공업용수는 흥해하수처리장의 침전수를 재이용할 계획이나 해당 지역은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며 용수 수요량(생활용수: 3,697m³, 공업용수: 3,707m³) 상당하여 계획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므로 양덕정수장의 현재 가동률, 장래 여유용량과 용수공급 가능량 등을 평가하고 공업용수는 용도별 재이용 수질 기준의 만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용수공급계획의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함 - 생활용수 공급은 인근 지역의 장래 용수 수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항시 협의 의견에 따라 공업용수는 재이용수가 아닌 양덕정수장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토록 할 계획임. 또한 양덕정수장에서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운영시 필요로 하는 용량만큼 공급할 수 있도록 협의중에 있음 |

| 구 분 | 협 의 의 건 | 반 영 계 획 |
|-----------------------|---|---|
| | <p>를 파악하여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수처리수 재이용 계획은「하수처리수 재이용 가이드북」(환경부, 2009)과 「물 재이용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한국상하수도협회, 2013) 참조 <p>○ 운영 시 발생하는 오폐수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이 누락되었으므로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할 경우 해당시설의 설계부하 초과 및 미만 여부, 여유 유량 및 부하량 등 발생 오폐수의 수용 여부를 검토제시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인근 하천으로 방류할 경우 오폐수 처리수 방류로 인한 갈수기 및 저수기 등 유량이 적을 경우에 대한 수질예측(BOD, COD, T-P 등)을 실시하고 수용 하천의 수질 등급 하락이 없도록 오폐수 처리수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설정 <p>○ 사업지구 내에서 강우 초기에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한 비점오염물질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구 내 우수 저감시설 설치 계획(p294)과 연계하여 저감대책 수립 - 저감시설의 종류, 위치, 용량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실시계획 수립 시 반영 - 「비점오염원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환경부, 2014)을 참고하여 시설의 유지·관리 등 사후관리계획을 수립 - 자연적 저류 및 침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형적 굴곡 및 요철 등을 자연상태로 가능한 보전하고 지반 다짐 최소화 | <p>○ 운영 시 발생하는 오폐수에 대하여 흥해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후 처리토록 계획하였으며, 설계부하 초과 및 미만 여부, 여유 유량 및 부하량 등 오 폐수의 수용여부를 검토하여 제시토록 하겠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처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흥해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후 처리토록 계획하였음 <p>○ 계획부지 내 초기 강우에 대한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위치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시설의 유지·관리 등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토록 하겠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구 내 우수 저감시설 설치 계획을 검토·제시하여 저감대책 수립하겠음 - 「비점오염원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환경부, 2014)을 참고하여 시설의 유지·관리 등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음 - 자연적 저류 및 침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형적 굴곡 및 요철 등을 자연상태로 가능한 보전하고 지반 다짐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
| <p>다. 수리수문</p> | <p>○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소하천의 수로화 및 유역의 상당 면적이 불투수면으로 전환됨에 따라 홍수량 증가가 예상되므로 현재 사업지구 하류는 소하천을 중심으로 주거지 등 보호 대상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홍수량 증가가 예상되는 개별 (소)하천별 홍수량 증가와 홍수위 증가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고 필요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소)하천별 개발 전·중·후의 홍수 수문곡선과 함께 저감대책 후 홍수 수문곡선의 변화를 비교 <p>○ 도달시간이 개발 전보다 개발 후에 차이가 없거나 길어지는 것은 납득이 어려우므로 이를 재검토하여야 함</p> <p>○ 유로 변경하여 하천환경을 지나치게 훼손하므로 이를 재검토하되, 불가피 할 경우 계획 유로길이가 기존 유로길보다 짧지 않게 계획하여야 함</p> | <p>○ 사업대상지는 개발사업에 따라 개발전 산림과 농경지에서 개발중 나대지 증가, 개발후 공업 및 산업용지, 주거용지 등 불투수지역의 증가로 인하여 개발에 따른 홍수유출량이 증가하므로 금회 과업에서 증가되는 유출량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로 개발중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 개발후 영구저류지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개발로 인한 하류지역의 홍수량 증가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에 따른 홍수 수문곡선 및 저감시설 설치후 홍수 수문곡선의 변화를 비교하였음. <p>○ 금회 사업대상지의 각 소유역별로 농경지 및 산지에서 단지가 조성되므로 개발에 따른 유역특성(유로연장, 유로경사)이 변화하였으며, 유역특성의 변화로 인하여 개발에 따라 도달시간이 변화한 것으로 검토되었음.</p> <p>○ 산업단지 정형화로 불가피하게 녹지 및 공원으로 하천수로를 계획하였음.</p> |

| 구 분 | 협 의 의 건 | 반 영 계 획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을 복개하는 계획에 대하여 재검토 - 주 유로에 대해 지표수와 토양수가 교류하고 하천이 친수성과 환경성, 자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 계획고와 하천 바닥 높이가 15~20m 차이가 발생되어 open 수로 개발시 산업단지 측으로 30~40m의 사면 발생됨으로 부득이하게 수로를 복개토록 계획하였음. - 오픈 유로구역에 대해 지표수와 토양수가 교류하고 하천이 친수성과 환경성, 자연성을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하겠음 |
| 라. 토지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에 따른 생태면적률은'생태면적을 적용 지침(환경부 2011)'상의 최소달성목표(80%)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면적률은 '생태면적을 적용 지침(환경부 2011)'상의 최소달성목표(30%)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토록 하겠음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의 오염원이 주거단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단지계획 수립 시 바람 방향을 고려하여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주 풍향을 고려하여 단지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음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도시(포항)와 단절될 주거단지로서 향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버스순환계획을 대비하여 버스계류장을 설치하는 것을 계획안에 포함시키고 운동시설의 확충 및 시설의 고급화를 위한 실내체육관 설치 등도 고려하여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토지이용계획시 단지 내 버스계류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운동시설의 확충 및 실내체육관 설치 등은 검토후 반영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음 |
| 마. 토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제시된 저감대책은 유치업종으로 인한 취급물질 종류 등 구체적인 영향이 반영되지 않은 일반적인 대책으로 유사사례(유사 규모 및 유치업종)에 관한'토양측정망 운영 결과'와'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등의 문헌조사 결과를 조사·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단지 운영으로 인한 영향을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사례(유사 규모 및 유치업종)에 관한 '토양측정망 운영 결과'와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 등의 문헌조사 결과를 조사·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단지 운영으로 인한 영향을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수립하겠음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조사 대상은 사업부지 관내가 아닌 전국에 대한 결과를 활용하여 조사·분석 - '토양측정망 운영 결과' 자료의 경우, 측정 목적별 분류 상'산업'에 대한 결과를 중점으로 오염도 및 오염 추이를 분석 -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는'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공장폐수 유입지역', '산업단지 주변 등의 주거지역'등을 포함하여 조사 - 우려기준 초과 지점에 대한 상세한 조사·분석(유치업종, 오염원인, 오염정도, 오염물질 등)을 바탕으로 본 사업의 영향예측을 실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작성시 문헌조사는 전국에 대한 결과를 활용하여 제시토록 하겠음 -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작성시 '토양측정망 운영 결과' 자료 인용시 산업시설에 대한 결과를 중점으로 오염도 및 오염 추이를 분석하여 제시토록 하겠음 -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는'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공장폐수 유입지역', '산업단지 주변 등의 주거지역'등을 포함하여 제시토록 하겠음 - 우려기준 초과 지점에 대한 상세한 조사·분석(유치업종, 오염원인, 오염정도, 오염물질 등)을 바탕으로 본 사업의 영향예측하여 제시토록 하겠음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토(비옥토) 보전을 위해서는 발생량과 재활용 가능량을 구체적으로 예측하여야 하며, 채취, 운반 및 보관 과정에서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 구체적인 보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토양 회수율을 최대화하기 위한 채취방법 선정 - 운반 시 표토 유실 최소화 방안 고려 - 조경면적을 고려한 재활용 가능량을 산정하고 발생 전량 활용이 어려운 경우 기타 재활용률 제고 방안을 선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토(비옥토) 보전을 위해서는 발생량과 재활용 가능량을 구체적으로 예측하여야 하며, 채취, 운반 및 보관 과정에서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 구체적인 보전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음 - 좌변에 제시된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음 - 표토(비옥토) 운반시 유실 최소화 방안을 고려토록 하며, 조경면적을 고려한 재활용 가능량을 산정하고 발생 전량 활용이 어려운 경우 기타 재활용률 제고방안을 선정토록 하겠음 |

| 구 분 | 협 의 의 건 | 반 영 계 획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걱정 사용 여부(재활용률, 재활용내용 등)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계획 수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사후환경영향조사시 재활용률 및 재활용내용 등을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하겠음 |
| 바. 지형·지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구 남측에 광산이 위치하고 있으나, 광산의 현황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근거 제시도 없이 영향권에 위치하지 않다고 기술(p483)하고 있으나 사업지구와 인접한 광산에 대해서는 아래사항을 참조하여 현황을 조사하고 사업지구에 대한 영향 여부를 예측하여야 함 - 광산의 종류, 등록 현황, 이격 거리, 채굴 여부, 채굴 방법 등을 조사 - 금속광이나 석탄광과 같이 중금속 유출 및 산성배수의 영향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중금속 유출과 산성배수의 영향 등을 검토 - 비금속 광물 중 납석의 경우에는 중금속이 일반적인 토양보다 많이 포함된 경우도 있어 오염된 침출수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므로 광상이 배태된 지층의 분포 현황을 정밀조사 실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부지 주변 광산에 대한 광산의 종류, 등록 현황, 이격 거리, 채굴 여부, 채굴 방법 등을 제시토록 하겠음. 또한 광산의 금속광이나 석탄광과 같이 중금속 유출 및 산성배수의 영향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중금속 유출과 산성배수의 영향 등을 검토하여 제시토록 하겠음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구는 제3기 연일동에 해당하는 미고결 퇴적층을 기반암으로 하고 있어 지반안정성의 확보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고층건축물(공동주택 용지 등)이나 정밀기계 입주 예정지를 조사하고 동 지역에 대해 지반안정성 검토를 수행하고 필요시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미고결 퇴적층은 건조 상태에서는 일반적인 암석과 유사한 강도를 가지나 습윤상태에서는 연약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특성을 고려한 안정성 검토가 필요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보고서에서 수행된 지질조사는 고층건축물(공동주택 용지 등)이나 정밀기계 입주 예정지, 절취 비탈면 대상 구간을 중심으로 수행하였음. ○ 사업부지와 인근한 흥해기계1 국도건설공사 실시설계 보고서에 수록된 미고결 퇴적층인 이암과 관련된 문헌을 참고하여 설계지반정수를 검토하였음. 또한, 이를 고려한 지반(절취 비탈면 등) 안정성 검토를 수행하였음.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 시 예측된 토공량으로 산정된 지형변화지수(14.4)는 일반적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권고되는 지형변화지수의 최대치인 10을 상회(지형변화지수 14.4)하고 있어 사업시행 시 다량의 절성토 발생 및 심각한 지형 훼손이 우려되므로 사업시행 시 지형 훼손의 규모가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한계 이내에서 발생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의 조정을 포함하여 계획고의 조정, 단차 조성 등의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고의 조정 및 단차 조성 등을 검토하여 토지이용계획 조정 가능 여부 제시토록 하겠음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횡단면도 B-B'의 블록 01-3쪽 경계부 도면을 하나로 통일시키고, 지반고, 절토고, 성토고 등의 정보 제시, 상세도의 옹벽 높이, 사면고, 사면기울기 비율 등을 제시하여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횡단면도 B-B'의 블록 01-3쪽 경계부 도면을 하나로 통일시키고, 지반고, 절토고, 성토고 등의 정보 제시, 상세도의 옹벽 높이, 사면고, 사면기울기 비율 등을 제시토록 하겠음 |
| 사. 동식물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구 내 생태자연도 2등급의 산림지역 중 경사도 20도 이상인 지역(약 24%)은 대규모 절성토의 영향으로 식생의 훼손(100만㎡ 이상)이 유발될 예정인 바, 수목 훼손 저감대책에 추가하여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등으로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구 내 생태자연도 2등급의 산림지역 중 경사도 20도 이상인 지역의 수목 훼손 저감대책에 추가하고,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등으로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음. |

| 구 분 | 협 의 의 건 | 반 영 계 획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사도 20°이상이면서 녹지자연도 7등급 이상인 지역을 토지이용계획도에 중첩한 도면을 제시하고 당해 지역을 가급적 원형보전하는 등 보전방안을 제시 ○ 사업지구 내 소규모 하천들이 통과하므로 조사 지점을 추가로 선정하여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며, 하천 생태계의 훼손 및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대책을 아래의 추가 조사결과를 토대로 수립하여야 함 - 식생조사지점을 사업 예정부지 영향권 내외의 각 군락별 대표지점에서 선정하여 조사한 결과를 식생조사표로 제시 - 육수생물상의 조사지점 및 시기에 따라 조사결과와 변동이 크며, 조사지점의 종 조사결과, 종 다양도 지수, 생태계 평가질, 수질 등 결과의 연계성이 불일치하여 조사의 신뢰성이 결여되는 바, 사업 예정부지 내외의 하천별 육수생태계 대표지점을 추가 선정하여 조사한 결과 제시 ○ 훼손되는 식생군락 중 다층 구조로 형성된 군락에 대해서는 이식 가능한 군락을 선정하고 표도와 함께 식생의 층 구조별(교목, 아교목, 관목 등)로 수목을 선정하여 이식가능 장소에 이식하고, 단층 구조인 식생의 경우 교목을 이식하여 훼손식생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이식에 필요한 면적을 최대한 확보(이식 및 가이식 장소, 녹지, 조성공원 등 포함)하여 이식하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본 평가서는 하나의 문헌조사 자료를 인용한 바,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에서 실시된 최근 6년 이내의 문헌조사 자료(각종의 동·식물상 조사 보고서, 타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등 최소 4개 이상의 문헌자료)를 추가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 동 계획지구와 생태적 동질성이 있는 주변지역에서 실시된 문헌조사 자료를 대상으로 실시 - 문헌조사로 파악된 모든 법정보호종에 대하여 동 계획지구 또는 주변지역에서의 서식·출현 가능성을 면밀하게 예측하고, 서식·출현 가능성이 예측된 법정보호종에 대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예측하여 그에 적합한 저감대책을 수립·제시 - 영향 예측 후 필요시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조정·축소·제척 등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저감방안을 강구 - 법정보호종은 산림청 지정'특별산림보호대상종'과 농림축산식품부 지정'희귀식물'등을 포함하여 서식 여부를 조사하고, 서식이 확인될 경우 실효성 있는 저감대책을 수립 ○ 훼손수목 이식계획 중 가이식장에 관한 계획이 누락된 바, 가이식장의 위치 및 규모에 관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사도 20°이상이면서 녹지자연도 7등급 이상인 지역은 가급적 원형보전하는 등 보전방안을 제시하겠음. ○ 현지조사시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이 예상되는 수계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가을조사시 수계조사 지점을 추가로 선정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음. 본안 보고서 작성시 하천 생태계의 훼손 및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결과를 토대로 저감대책을 추가 수립하겠음. - 사업지구 내에 분포하는 각 군락별 대표지점을 선정하여 식생조사지점의 조사결과를 제시하겠음. - 현지조사시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이 예상되는 수계조사지점을 선정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가을조사시 계획지구 내외에 수계조사지점을 추가로 선정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음. 본안 보고서 작성시 추가 조사지점을 포함한 결과 값을 제시하겠음. ○ 훼손되는 식생군락 중 다층 구조로 형성된 군락에 대해서는 표도와 함께 식생의 층 구조별(교목, 아교목, 관목 등)로 수목을 선정하여 이식가능 장소에 이식하고, 단층 구조인 식생의 경우 교목을 이식하여 훼손식생 발생을 최소화할 것이며, 이식에 필요한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여 이식계획을 수립하겠음. ○ 본안 보고서 작성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에서 실시된 최근 6년 이내의 문헌조사 자료를 추가로 조사하여 결과를 제시하겠음. - 문헌조사에서 확인된 법정보호종에 대하여 동 계획지구 또는 주변지역에서의 서식·출현 가능성을 면밀하게 예측하고, 서식·출현 가능성이 예측된 법정보호종에 대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예측하여 그에 적합한 저감대책을 수립·제시하겠음. - 영향 예측 후 필요시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조정·축소·제척 등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저감방안을 강구하겠음. - 법정보호종은 산림청 지정'특별산림보호대상종'과 농림축산식품부 지정'희귀식물'등을 포함하여 서식 여부를 조사하고, 서식이 확인될 경우 실효성 있는 저감대책을 수립하겠음 ○ 본안 보고서 작성시 가이식장의 위치 및 규모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구체적인 이식계획을 수립 및 제시하겠음. |

| 구 분 | 협 의 의 건 | 반 영 계 획 |
|---------------------|---|---|
| | <p>정보를 포함한 구체적인 이식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p> <p>○ 사후환경조사계획에 아래사항을 반영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한 보전지역(원형보전지 등)에서의 동·식물상 보전대책 및 저감대책의 이행현황 조사결과, 동·식물상 변화에 관한 조사결과 - 녹화(원충경관·사면녹지, 식생복구지 등)공정현황 및 공정률 조사결과 - 훼손수목 이식현황 및 이식률 조사결과 - 육수생물의 경우, 우기 시 토사유출로 인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사 중 우기 시에 월 1회 이상 조사 - 생태계교란야생식물을 별도의 조사항목으로 설정하고, 공사 시 춘계/하계/추계에 각 1회, 운영 시 춘계/하계/추계 중 2계절 1회 조사 <p>○ 사후환경조사결과 통보서는 동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전략/소규모/환경보전방안 등 포함)의 조사결과부터 사후환경영향조사시의 최초 1차년도부터 금회기간까지의 모든 연차별 조사결과를 수록하여야 함</p> | <p>○ 사후환경조사계획 수립 시 반영하겠음.</p> <p>○ 사후환경조사결과 통보서는 동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의 조사결과부터 사후환경영향조사시의 최초 1차년도부터 금회기간까지의 모든 연차별 조사결과를 수록하겠음.</p> |
| <p>아. 친환경적 자원순환</p> | <p>○ 지장물 철거 시 유해물질(석면, 수은, 변압기 내의 PCB 등)이 포함된 폐기물이 배출될 수 있으므로, 유해성 폐기물 발생 시 유형별 보관처리방안 등 적정 관리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p> | <p>○ 공사로 인한 지장물 철거시 유해물질(석면, 수은, 변압기 내의 PCB 등)이 포함된 폐기물이 배출될 수 있으므로, 유해성 폐기물 발생 시 유형별 보관처리방안 등 적정 관리계획을 수립·제시토록 하겠음</p> |
| <p>자. 소음진동</p> | <p>○ 본 사업 시행(진입도로 포함)으로 인하여 소음진동 피해가 우려되는 모든 정온시설(문화재, 사육시설, 위험물 저장 시설, 정밀기기 운영 시설 등) 분포 현황을 도면(지형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평면도 및 단면도)과 표를 사용하여 명확히 표기하여야 함</p> <p>○ 각 정온시설별로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피해가 우려되는 소음진동 유발 공종과 실제 사용하는 장비를 고려하여 각 지점별 소음진동도 평가(공종별 투입되는 장비의 종류 및 대수의 산출 근거 명기, 소음 및 진동 평가시 공히 동일한 장비를 근거로 연계평가)하여야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장 소음진동 예측시「공사장 환경분쟁사건 소음진동도 산출 방법개선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07.11월) 참조 - 공사 시 저감대책을 수립한 후에도 환경목표 기준에 근접하는 시설에 대한 다양한 추가대책(소음 현황판 설치, 전담인력 배치 등) 및 이를 담보할 수 있는 공사장 관리계획을 수립 -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 영향 예측 시 동시 투입대수(4대)가 아닌 투입되는 모든 장비(40대)로 산정 | <p>○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제시된 영향예측지점에 대하여 지형 현황을 파악할수 있도록 평면도 및 단면도 등을 제시토록 하겠음</p> <p>○ 각 정온시설별로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피해가 우려되는 소음진동 유발 공종과 실제 사용하는 장비를 고려하여 각 지점별 소음진동도 평가토록 하겠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조하겠음 - 향후 사후환경영향조사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관리토록 하며, 주변 민원 발생시 그에 따른 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적극 반영토록 하겠음 - 환경영향평가(본안) 작성시 투입장비 모두 적용하여 영향예측을 실시하며, 그에 따른 저감방안을 제시토록 하겠음 |

| 구 분 | 협 의 의 건 | 반 영 계 획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파 작업 시 사업지구 인근에 산재하는 충격 성분이 강한 발파소음진동에 민감한 시설물(사육시설, 문화재, 위험물 저장소, 정밀기기 사용 시설 등)의 용도 및 상태 등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에 따라 각 시설물별로 허용이 가능한 한계 소음진동도를 최근 자료를 근거로 설정한 후, 이를 고려하여 발파공법을 결정하는 등의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공장 소음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사업 지구 주변의 정온시설(주거시설 등)은 공장 운영 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목표 기준의 설정은 환경기준을 근거로 피해가 예상되는 수음자 또는 시설을 기준으로 설정 - 소음·진동도 현황과 비교하여 운영 시 높아지는 소음·진동도에 대한 수인한도 -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 기준(주거시설의 경우 “가” 및 “나”지역 적용) - 사육시설의 경우「환경분쟁 피해배상액 산정기준 조정·보완 시행」(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08.1월) - 현재 입지하고 있는 정온시설의 특성 및 장래 입지가 예상되는 시설 고려 - 상기에서 조사된 각종 목표 기준을 비교·분석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중복되는 경우에는 엄격한 기준을 근거로 설정 - 법원 판례 등을 참조하여 시설별로 설정(근거 명기)한 후 각 시설물별 목표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공법을 결정 - 정온시설별 환경목표 기준 설정(근거 포함) - 각 정온시설에 미치는 소음도 예측(유사업종 실적자료 등 예측 근거자료 첨부) - 목표 기준을 초과하는 정온시설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 - 야간 운영계획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 야간 공장 소음 별도 평가 ○ 산업단지 운영으로 인해 차량 통행(특히 대형 차량 등)이 증가되어 진입도로 주변의 정온시설에 대한 소음영향이 예상되므로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평가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입도로 주변의 정온시설 현황 파악 - 정온시설별 환경목표 기준 설정(근거 포함) - 산업단지 운영에 따른 교통량(대형 차량 비율 등) 및 차속을 교통관련 전문가를 통하여 산출(소속 및 참여자 등을 명시) - 상기 자료를 근거로 구간별 및 시간대별 소음 예측을 통해 소음이 최대 발생하는 시점에서의 정온시설에 대한 소음영향 예측 및 저감 대책 수립 - 장래 고층 주거시설이 입지할 예정이며, 운영시 피해가 예상(p776) 되므로 보다 정확한 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파 작업 시 사업지구 인근에 산재하는 충격 성분이 강한 발파소음진동에 민감한 시설물(사육시설, 문화재, 위험물 저장소, 정밀기기 사용 시설 등)의 용도 및 상태 등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에 따라 각 시설물별로 허용이 가능한 한계 소음진동도를 최근 자료를 근거로 설정한 후, 이를 고려하여 발파공법을 결정하는 등의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토록 하겠음 ○ 환경영향평가(본안) 작성시 좌변에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제시토록 하겠음 ○ 계획부지 운영시 차량 통행으로 인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예측시 좌변에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제시토록 하겠음 - 교통관련 전문가를 통한 산출근거로 정온시설에 대한 영향 예측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겠음 - 고층 주거지역(아파트)에 대한 3차원 소음예측모델을 실시 하겠으며, 녹지대 소음 저감효과 및 야간 운영계획 여부를 |

| 구 분 | 협 의 의 건 | 반 영 계 획 |
|-----------------------|--|--|
| | <p>(예측 및 저감대책의 수립)를 위하여 3차원 소음예측모델 사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지대의 소음 저감효과는 조성 방식, 관리 상태 및 계절적 요인에 따라 효과를 보장하기 어려운 저감대책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근거(실제 사례, 구체적인 조성계획, 모니터링 계획, 저감 효과가 못 미칠 경우 대책 등)를 제시하거나 보다 안정적인 저감대책 수립 - 야간 운영계획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 도로 소음 별도로 평가 | <p>검토하여 평가하겠음</p>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검토의견을 반영하고, 소음피해가 발생하는 세대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추가적인 대책의 수립이 가능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조사지점, 조사 시기 및 빈도, 책임기관 지정 등)을 수립(근거 포함)하여야 함 - 공장 운영에 따른 주변지역 영향분석을 위한 모니터링 지점 추가 선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사후환경영향조사시 주변 민원 등 미리 예측 못한 상황 발생시 주변 지역주민과 협의 후 저감방안을 수립토록 하며, 추가 사후환경영향예측 지점으로 선정하여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하겠음 |
| <p>차. 위락경관</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이용계획 상 고층·고밀도로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업·업무시설에 대한 층고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배경 산지의 높이나 주변 건축물의 층고 계획 등과의 조화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어려운 바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자연녹지지역 내 구릉성 산지에 산업, 주택, 상업·업무 시설 등을 포함하는 고층·고밀의 복합 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서 사업지구 인근에 위치하는 기존 취락지역 및 학교(p790 정은시설 참조)와 건설 추진 중인 이인지구 등에 상당한 경관적 영향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관 영향분석에서 해당 지역의 조망점이 누락되어 있는 바, 이를 추가하여 경관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개발 후 경관변화를 적정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낮은 구릉성 산지에 고층 건축물을 건설하고자 하는 본 계획의 특성상 배경 산지의 스카이라인을 넘는 돌출 구간이 일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p803-805), 건축물 층고 및 배치를 적정히 조정하여 주요 조망점에서 건축물 돌출 구간을 최소화 또는 최대한 차폐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함 - 돌출이 불가피할 경우 해당 구간이 집적·연속되는 형태로 계획하여 돌출 지점이 띄엄띄엄 분산되는 것을 지양하고 건축물 높이가 배경 구릉지의 지형을 따라 조화롭게 배치 ○ 절성토로 인한 높은 사면과 최고 높이 10m의 옹벽이 잘 보이는 복수의 지점을 조망점으로 선정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경관영향을 평가하여야 함 - 경관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옹벽의 높이를 3m 이하로 낮추거나 사면으로 변경하고, 사면 고가 높은 곳은 원형으로 녹지를 보전하는 등 부지 조성계획을 변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평가(본안) 작성시 토지이용계획상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층고 계획을 제시토록 하겠음 ○ 계획부지 주변 기존취락지구 학교, 이인지구 등 다양한 곳에서 경관적 변화를 검토하여 제시토록 하겠음 ○ 환경영향평가(본안) 작성시 토지이용계획상 건축물의 높이를 고려하여 계획부지 주변 주요 조망점을 선정하여 경관 변화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토록 하겠음 - 계획의 특성상 배경 산지의 스카이라인을 넘는 돌출 구간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며, 돌출구간에 대하여 직접·연속되는 형태로 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건축물 높이가 배경 구릉지의 지형을 따라 조화롭게 배치되도록 하겠음 ○ 절성토로 인한 높은 사면과 최고 높이 10m의 옹벽이 잘 보이는 복수의 지점을 조망점으로 선정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경관영향을 평가하여 제시토록 하겠음 - 토지이용계획 변경가능 여부 검토시 좌변에 제시된 의견을 검토 후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 제시토록 하겠음 |

| 구 분 | 협 의 의 건 | 반 영 계 획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경관 영향분석을 위한 자료가 부족하므로 아래사항을 보완하여 제시하여야 함 - 자연경관심의 지침을 2012년도 자료가 아닌 2009년 자료를 참고하는 등 오류가 있으므로 문헌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 - 사업지역 경관분포 파악을 위한 A3 규격의 고해상도 항공사진과 중첩하여 제시 - GIS 프로그램을 이용한 가시권분석을 통해 조망권별(p797) 가시권 영역 도면화 - 28번 국도에서 배후 산림의 산경(능선부) 대상으로 스카이라인을 분석하여 7부 능선 이상의 스카이라인 훼손여부를 정량화하여 제시 - 주변 자연환경과의 연결성을 고려한 경관축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본 산업단지에서 주변 산림이나 개방공간을 조망할 수 있는 동경축 확보방안을 제시 - 남북방향 녹지축 추가 확보방안(동서방향을 비교적 잘 형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평가(본안) 작성시 좌변에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제시토록 하겠음 - 최근 지침을 적용하겠음 - 경관분포 파악이 용이하도록 하겠음 - 조망권별 가시권 영역을 도면화하겠음 - 28번 국도에서의 스카이라인 훼손여부를 정량화하여 제시 하겠음 - 경관축 조성방안 및 통경축 확보방안을 제시하겠음 - 남북방향 녹지축 추가 확보 방안을 검토하겠음 |
| <p>차. 위생공중보건</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암성·비발암성 물질에 대한 현황농도 부분이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실측하여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위해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위해도 평가시 현황농도에 가중농도를 추가하여 재실시 - 위해도 평가 결과 일부 물질에 대하여 위해도 지수를 초과하는 것으로 산정되었으므로 해당 물질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계획과 이를 적용한 위해도 지수를 재산정하여 저감대책의 적절성을 검토 ○ 금번 사업계획은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이 공존하고 있어 운영 시 사업지구 내·외부의 주거시설 및 교육 시설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해도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되거나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중심으로 사업지구 내·외부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농도를 확인하고 가중농도 추가, 위해도 초과 물질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계획 수립 등을 반영한 위해도 평가를 실시하여 적절성을 검토하겠음 ○ 지구내 산업시설로 인한 위해물질 모니터링을 위한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하겠음 |
| <p>타. 인근</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민원 대책의 일환으로 공사용 차량 등의 교통안전 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차량 운행노선 선정 시에 인근 마을, 교육시설, 복지시설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고,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회피하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속하는 방안(회피구간 및 감속구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바람) - 사업의 공사차량임을 알 수 있도록 사업명, 민원 접수 연락처 등을 차량에 표시 - 과속·과적 차량운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는 민원 창구를 마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사토 및 부족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부지 외 지역으로 공사차량 이동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음. 향후 외부로의 차량 이동이 있을 경우 교통안전 관리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음 - 공사차량 운행에 따른 노선 선정시 좌변에 제시된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음 |
| <p>파. 기타</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지구 인근에 운영중이거나 조성·계획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부지 주변 운영 또는 조성·계획중인 산업단지에 대한 |

| 구 분 | 협 의 의 건 | 반 영 계 획 |
|-----|--|---|
| | 인 9개의 산업단지가 분포하고 있으므로 위 산업 단의 입주율을 조사하여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해 사업의 규모 축소 등을 검토하여야 함 끝. | 입주율을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사업 규모 축소 등을 검토하여 제시토록 하겠음 |

[경상북도]

| 구 분 | 협 의 의 건 | 반 영 계 획 |
|---------|--|---|
| 환경영향평가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 대상규모 이상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만 해당한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므로 실시계획 승인 전 협의기관(대구지방환경청)과 협의하여야 함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은 실시계획 승인 전 협의 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대구지방환경청(협의기관)과 별도 협의 중에 있음 |
| 자연환경보전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이므로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인·허가 등의 처분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의 면적, 내용 등을 도 환경정책과로 통보하여야 함(통보서식 :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인·허가 등의 처분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 인·허가 등의 통보 서류를 제출토록 하겠음 |

[포항시]

| 구 분 | 협 의 의 건 | 반 영 계 획 |
|-------|--|--|
| 청소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5조(산업단지조성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등)에 의거 공동주택 또는 택지개발사업일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설치비용 부과 대상이나 산업단지일 경우에는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과 대상이 아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변에 제시된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음 |
| 환경관리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회신한 내용 참고 : 환경관리과-5186(2015.2.26.)호 및 환경관리과-12356(2015.5.6.) - 환경관리과-12356(2015.5.6) 내용 - 대기소음 : 사업지역 주변 주거지 등은 비산먼지, 소음진동 피해가 예상되므로 공사시 상시 관리방안을 수립할 것 - 수질 : 토사 및 이암층에 의한 강한 산성수 유출에 대비한 수생태계 보전대책을 수립할 것(초곡천 등) - 폐기물 :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매립장 설치 검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질 :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모니터링을 통하여 악영향을 최소화 할 계획임 (공사시 : 사업착공시부터 공사완료시, 운영시 : 사업 준공후 3년) - 수질 : 환경영향평가(초안)시 수질 측정결과 초곡천의 pH는 6.6~6.9로 매우좋은 상태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향후 공사시 이암층에 의한 산성수 유출시 생태연못, 약품 사용 등을 통하여 pH를 중화토록 하겠음 - 폐기물 :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운영시 발생하는 폐기물 총발생량은 약 16,676.88톤/년(재활용 폐기물 제외)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1항1호에 제시된 연간 폐기물 발생량 2만톤 이상, 조성면적 조성면적 50만㎡ 이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 구 분 | 협 의 의 건 | 반 영 계 획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사항(경주환경) : 산업시설과 주거지역이 근접하여 환경피해가 예상되므로 완충지대 확보 방안 필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사항 : 각 해당부서 및 환경청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토지이용계획 변경시 완충지대 추가 확보 여부를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음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5조 규정에 의거 재활용되는 양을 제외한 폐기물발생량이 연간 1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 15만㎡이상인 공장을 개발 설치할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변에 제시된 폐기물 발생량 기준(연간 1만톤 이상, 조성면적 15만㎡이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1항2호에 제시된 공장 개발·설치 또는 증설할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이며,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의 경우 산업단지로서 시행령 제3조 1항1호에 제시된 연간 폐기물 발생량 2만톤 이상, 조성면적 50만㎡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임.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 조성시 발생하는 폐기물 발생량(재활용 제외)은 약 16,676.88톤/년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 규정에 의거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및 「소음진동관리법」제22조에 의한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산먼지발생사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58조1항에 따라 사업시행 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전) 제출토록 하겠음 ○ 특정공사사전신고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 21조2항에 따라 향후 공사 시행 전(건설공사는 착공 전)제출토록 하겠음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지구가 조성된 후에는「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당되는 공장이 입주 할 경우에는 허가(신고)를 득하여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조성 후 입주 공장은 「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법률」에 해당할 경우 허가신고를 득하도록 하겠음 ▷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 소음·진동배출시설설치신고 등 |